

규제영향분석서

보험업법 시행령

<목 차>

-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중요 설명의무 신설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대상에 추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자	이름	태현수
	담당부서 (과)	보험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최훈		연락처	02-2100-2962
	과장	하주식		이메일	hstae@korea.kr

정책책임자직위

성명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 규제사무명	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중요 설명의무 신설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대상에 추가		
	2. 규제조문	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		
	3. 위임법령	보험업법 제95조의2		
	4. 유형	신설	5. 입법예고	
규제의 필요성	6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p>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 등에 따라 대리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기준 중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</p> <p>계약자가 통지의무 위반 효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</p>		
	7. 규제내용	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에 따라 그 중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신설		
	8.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	상법(652조제1항) 등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보험모집 단계에서 미리 계약자에게 안내토록 하여,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보험금 삭감지급,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사후에 받지 않도록 함		
	9. 규제목표	<p>간단손해보험대리점 보험계약시 재화 등과 별도로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</p> <p>보험계약시 설명의무 대상을 통지의무까지 확대하여,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취소나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을 예방</p>		
	10. 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규제의 적정성	11. 비용편익			

	분석 (정성분석)	
기타	12. 일몰설정 여부	해당없음
	13. 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

〈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의2(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)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"보험료, 보장범위,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6. (생 략) <u>6의2. <신 설></u> <u>7.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</u> 8. ~ 11. (생 략)	제42조의2(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)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"보험료, 보장범위,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6의2. 제33조의2제4항제2호다목</u> <u>7.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</u> 8. ~ 11. (현행과 같음)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 등에 따라 대리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기준 중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
- 계약자가 통지의무 위반 효과^{*}를 명확히 인지하고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

* 상법 제652조제1항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,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

-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 또는 금융당국의 직접 규율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< 현행유지안 : 일반적인 영업기준 적용 >

-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가지는 판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설명의무를 이행할 경우,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과 분리하여 구매 가능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
 - 재화 또는 용역(서비스)의 구매절차와 관련 보험의 가입절차가 밀접하게 연계된 간단손해보험의 특성상 판매자가 보험을 필수적 연계사항인 것으로 설명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
- 보험 계약단계에서 통지의무를 설명받지 못해 위험 변경·증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^{*}할 우려

* '16년 중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삐감지급 건수 12,839건, 계약해지건수 374건

< 비규제대안 : 자율적 시행 유도 >

-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핵심사항을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
 -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수수료 수취를 위하여 별도 판매 가능 여부 등을 설명할 유인이 없으므로, 별도 판매기준 및 설명의무 등을 규정화해야 할 필요
- 또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중 핵심사항 및 통지의무위반의 효과를 규정화하지 않을 경우 위반시 제재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

< 규제대안 :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 및 설명의무 강화 >

-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신설
-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험모집시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하도록 추가

<선택근거>

-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절차와 관련 보험의 가입절차가 밀접하게 연계된 간단손해보험의 특성상 판매자가 수수료 수취 등을 위하여 보험가입이 별도로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을 우려
- 통지의무와 관련된 계약자의 의무 이행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게 되는 의무이므로 보험모집인이 계약

체결시에는 설명을 등한시 할 우려

- 특히, 동 사안을 설명의무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, 보험회사 등이 중요사항 설명을 누락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도 미흡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보험업계	'17.상반기부터 금융당국, 보험업계,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/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	이견없음

3. 규제목표

-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보험계약시 재화 등과 별도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
- 보험계약시 설명의무 대상을 통지의무까지 확대하여,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취소나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을 예방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기존에도 부과하고 있는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의 대상을 단순 확대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국제기준 정합성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 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사항 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사항 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해당사항 없음

- 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사항 없음

- 국제 기준 정합성

해당사항 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해당사항 없음
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

해당사항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- o 해외사례

우리보다 간단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 간단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

* EU의 보험판매업무규정(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)

① 재화와 보험을 별도로 분리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② ①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함

③ 재화와 보험을 별도로 분리하여 구매하는 것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 보험료, 보험금 지급, 보장범위 등이 상이할 경우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함

- 타법사례

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 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

III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-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현재도 부과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대상을 단순 확대하는 것이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

- 규제 차등화 방안

해당없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- 행정적 집행가능성

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므로,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

- 재정적 집행가능성

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므로,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'17.상반기부터 금융당국, 보험업계,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/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

2. 향후 평가계획

-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설명의무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

3. 종합결론

-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보험계약시 재화 등과 별도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
- 보험계약시 설명의무 대상을 통지의무까지 확대하여,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취소나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

별 첨**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****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**

가격기준연도	현재 가치 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18	2018	1	5.5	백만원, 현재 가치

규제대안1 :

영향집단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 간접	47.86	43,605
피규제 일반국민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
정부			
총 합계	47.86	43,605	-43,557.14
기업순비용	-43,557.14	연간균등순비용	-43,557.14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 1 : 일반적인 영업기준 적용>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직접비용 :

업무제목	중요사항 상품설명서 추가
설명	

세분류	보험모집종사자
활동제목	중요사항 상품설명서 추가
비용항목	기타
비용	47,867,916
활동비용 특성	일시적
산식	설명대상 보험계약건[7,977,986]*추가지면[1]*1면당 비용[6] 1) '16년 간단보험대리점(법인) 보험계약 신계약 건수(5,500건) 및 '16년 보험회사 상해보험계약의 신계약 건수(7,972,486) 2) 추가적인 설명의무이행을 위한 상품설명서 필요지면 1면 3) A4용지 장당 가격 6원

직접편익 :

(정량)제목	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삭감 및 해지 예방
금액	43,605,000,000
산식	39,637,000,000 + 3,968,000,000
근거설명	1) 보험업계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'16년 기준으로, 보험계약자 등이 상법 제652조(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) 상의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입은 보험금 삭감 또는 해지 피해액은 약 436억원으로 추산(보험금 삭감지급 건수 12,839건(39,637백만원), 계약해지건수 374건(3,968백만원)) 2) 따라서, 설명의무 이행에 따라 소비자가 통지의무를 명확히 이행하여 예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연간 약 436억원으로 추산

--	--